★ ⊙

문서번호	교통행정과-42609
결재일자	2015.9.16.
공개여부	부분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교통행정팀장	교통행정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
이수연	황규영	조덕현	09/16 안대희	
협조				

-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-

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

2015. 9.

성 동 구

(교통행정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☐ 공약(약속)사업 ☐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모사업 ☐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● 구 민 : 유 ☐ ( ) 무 ☑ ● 전 문 가 : 유 ☑ ( ) 무 ☐ ● 이해당사자 : 유 ☐ ( ) 무 ☑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☐ 환경영향 ☐ 안 전 ☐ 유지비용 ☐ 바른 공공언어 ☐ 성 인 지 ☐ 취약계층 ☐ 장 애 인 ☐ 디 자 인 ☐ 갈등발생 요인 ☐
타자원 활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☐ ( ) 무 ☑ ● 서 울 시 : 유 ☐ ( ) 무 ☑ ● 기 업 : 유 ☐ ( ) 무 ☑ ● 민 간 단 체 : 유 ☐ ( ) 무 ☑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☐ 보 도 자 료 ☐ SDTV ☐ 성동뉴스레터 ☐ 성동구소식지 ☐ 기 고 문 ☐ 전자행정서비스 ☐ S N S ☐ 기타(리플릿 등) ☐ 없 음 ☑

● 홍 보 제 목 :

● 중점 홍보사항

-

-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-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-

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계획

교통량 감축계획에 참여하여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기업체(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시설물)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

Ⅰ 추진근거

○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(부담금의 경감)

○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(부담금의 경감)

○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12조(경감심의위원회 설치등)

Ⅱ 2015년도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개요

○ 개최일시: 2015. 9. 23.(수) 오후 14시00분

○ 개최장소: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

○ 참석대상: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9인 (명단 별첨#1)

○ 심의사항: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에 따른 경감비율 결정,
주상복합 시설 면제여부 심의 등

○ 심의대상

-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995개소 중 기업체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한 시설물
: 신영빌딩 등 119개소
- 주상복합 면제시설: 성동구 금호동3가 192-1 등 9개소

Ⅲ 소요예산

○ 소요예산: 총 700,000원(금칠십만원)

- 산출내역: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(100,000원 × 6명 = 600,000원)
간담회비(100,000원)
- 예산과목: 교통행정과,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개선, 교통행정개선,
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, 일반운영비(201-01)

Ⅳ 행정사항

○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심의결과 경감율결정 통보: 2015. 9월 말

○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고지서 송부: 2015. 10월 중순

붙임 1. 경감심의위원회 명단 1부.

2.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 1부.

3.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및 경감비율 1부. 끝.

별첨 1

성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명단

(2014. 10. 1 현재)

연번	직 위	성 명	근무처	주 소 연락처	직위 (직책)	비 고
1	위원장	안대희	성동구청	2286-5006	안전건설 교통국장	
2	위원	신동욱	성동구의회의원	둘레9나길15(성수동2가) **********	구의회의원	
3	위원	정재은	(주)대광기술단	강남구 대치 903-21 **********	교통기술사	송파구 송파동 58-7(5층)
4	위원	장영채	한세대학교 안전재단연구소	대치동633청실(아) **********	교수	
5	위원	유환필	(주)비젼도시연구소	2058-3005 **********	교통기술사	서초구 양재동 89-9 (4층)
6	위원	전예화	주민자치위원회	금호1가동 벽산아파트 **********	마중물복지협의 체 회장	
7	위원	황경식	성동구소식지 주부기자단	성수동2가 284-44 **********	회장	'14. 9.24 위촉
8	위원	정연분	바르게살기 성동구협의회	금호2가200 **********	여성분과 위원장	
9	위원	조덕현	성동구청	2286-5675	교통행정과장	
10	간사	황규영	성동구청	2296-5676	교통행정팀장	

별첨 2

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제도

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과정

이행계획서 제출	이행여부점검 (분·반기별 1회)	경감신청서 제출	경감률 결정	경감률 통보
2014.7.31.	2014.8.1.~ 2015.7.31.	2015.8.10.	2015.9.23.	2015.9.30.
기업체	관할구청	기업체	관할구청	관할구청
이행계획서 세부계획서	점검확인서 증빙서류	경감신청서	경감심의회	경감률결정 통보서

※ 확정된 경감률을 적용한 후,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예정 (10월중)

교통유발부담금이란?

대도시 교통문제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(1990년 이후 시행)

- 부과대상: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시설물
- 부담금산정: 연면적 × 교통유발계수 × 단위부담금

기업체교통수요관리란?

공공기관 및 민간시설물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물주(기업체)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시켜,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

- 참여대상: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
- 감축프로그램: 승용차부제, 주차장유료화, 업무택시제, 자전거이용 등 10개 프로그램
- 참여혜택: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0 ~ 30% 경감
  (참여정도,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)

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○ 근　　거: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

○ 위원회 개요

- 구　　성: 9인 이상 ~ 15인 이하
  ※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비공무원으로 구성
- 위원구성: 공무원, 지방의회 의원, 변호사, 시민단체 대표, 교통분야 전문가 등
- 위원임기: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음
- 의결정족수: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○ 주요기능

-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
-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
  · 부과면적 3천㎡ 미만, 너비 20m 이하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복리시설
  ·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주거복합건물 중 부과면적인 500㎡ 미만 시설
-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에 관한 사항
  · 장기간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
-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프로그램별 정해진 경감비율을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감비율의 20%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